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」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세대주 성명	공고사유
1	김도*	2008. 9. 24.	2025. 10. 1.~ 2026. 9. 30.	김영*	폐문부재
2	정수*	2008. 9. 01.	2025. 10. 1.~ 2026. 9. 30.	정용*	폐문부재
3	이교운**	2008. 9. 07.	2025. 10. 1.~ 2026. 9. 30.	허인*	폐문부재
4	이우*	2008. 9. 17.	2025. 10. 1.~ 2026. 9. 30.	이득*	폐문부재
5	이서*	2008. 9. 23.	2025. 10. 1.~ 2026. 9. 30.	강영*	폐문부재
6	이현*	2008. 9. 30.	2025. 10. 1.~ 2026. 9. 30.	이용*	폐문부재
7	최수*	2008. 9. 15.	2025. 10. 1.~ 2026. 9. 30.	최상*	폐문부재
8	송주*	2008. 9. 01.	2025. 10. 1.~ 2026. 9. 30.	송정*	폐문부재
9	황경*	2008. 9. 15.	2025. 10. 1.~ 2026. 9. 30.	황용*	폐문부재
10	백효*	2008. 9. 20.	2025. 10. 1.~ 2026. 9. 30.	백승*	폐문부재
11	송지*	2008. 9. 12.	2025. 10. 1.~ 2026. 9. 30.	송호*	폐문부재
12	강주*	2008. 9. 05.	2025. 10. 1.~ 2026. 9. 30.	강현*	폐문부재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정경호 문의전화 : 031-5189-7216)

2025년 9월 15일

남 양 읍 장 인 